
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일부개정령안

기 관 명 (부 서 명)	문화체육관광부 (영상방송콘텐츠산업과)
연 월 일	2026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 이유

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광고·선전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,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확인 결과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(법률 제21093호, 2026. 5. 12. 시행)을 개정함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

2. 주요내용
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는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의 확인 결과와 해당 광고·선전물의 세부사항을 명시함(안 제15조의6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특이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6(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광고·선전물 유해성 확인)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광고·선전물 유해성 확인 결과와 세부사항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광고·선전물의 제목, 용도, 종류
2. 배포·게시되거나 시청에 제공할 광고·선전물
3. 유해성 확인결과 및 결정사유

②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유해성 확인결과 등을 통보하고, 영상물등급위원회는 통보 내용을 확인하여 해당 광고·선전물에 대한 확인번호를 부여한다. 단, 통보받은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,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고·선전물 유해성 확인결과 및 세부사항 통보 절차,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5조의6(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광고·선전물 유해성 확인) ①</u> <u>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법 제66</u> <u>조의2제2항에 따라 광고·선전</u> <u>물 유해성 확인결과와 세부사항</u> <u>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</u> <u>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</u> <u>호의 사항을 말한다.</u> <u>1. 광고·선전물의 제목, 용도,</u> <u>종류</u> <u>2. 배포·게시되거나 시청에 제</u> <u>공할 광고·선전물</u> <u>3. 유해성 확인결과 및 결정사유</u> <u>②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1</u> <u>항에 따라 유해성 확인결과 등</u> <u>을 통보하고, 영상물등급위원회</u> <u>는 통보 내용을 확인하여 해당</u> <u>광고·선전물에 대한 확인번호</u> <u>를 부여한다. 단, 통보받은 자료</u> <u>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, 자체등</u> <u>급분류사업자에게 보완을 요구</u> <u>할 수 있다.</u> <u>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</u> <u>정한 사항 외에 광고·선전물</u>

	<u>유해성 확인결과 및 세부사항 통보 절차,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 으로 정한다.</u>
--	--